

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]

운용사	펀드명(운용펀드)	펀드명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사유발생일
다올자산운용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종류A	K55306DR3340	K55306DR3365	2023-04-28
다올자산운용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종류Ae	K55306DR3340	K55306DR3373	2023-04-28
다올자산운용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종류C	K55306DR3340	K55306DR3399	2023-04-28
다올자산운용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종류CF	K55306DR3340	K55306DR3423	2023-04-28
다올자산운용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	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종류Ce	K55306DR3340	K55306DR3407	2023-04-28

*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시함

* 근거규정: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

사*경/이

